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 계 · 주의 요구

제 목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에 관한 서류 허위 제출 및 확인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구, ○구, ○○군

징 계 대 상 자 ① 울산광역시 ○구 ○○○○과 지방○○○○○ ○○○
(전 ○○군 ○○○○과)

② 울산광역시 ○구 ○○○○과 지방○○○○○ ○○○

③ 울산광역시 ○○군 ○○○○과 지방○○○○○ ○○○

징 계 의 종 류 경 징 계

훈 계 대 상 자 ① 울산광역시 ○구 ○○○○과 지방○○○○○ ○○○

② 울산광역시 ○구 ○○○○과 지방○○○○○ ○○○

③ 울산광역시 ○구 ○○○○과 지방○○○○○ ○○○

내 용

위 관련자 중 지방○○○○○ ○○○은 2014. 8. 22.부터 2016. 1. 13.까지,
지방○○○○○ ○○○는 2006. 12.15.부터 현재까지, 지방○○○○○ ○○○은
2016. 1. 14.부터 2018. 1. 12.까지, 지방○○○○○ ○○○는 2005. 10. 1.부터 현
재까지, 지방○○○○○ ○○○은 2014. 8. 22.부터 2015. 7. 9.까지, 지방○○○○○

○○○은 2015. 7.10.부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관련업무를 수행하였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청¹⁾(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지적측량수행자²⁾에게 대행하고 있다.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위하여 지적측량수행자를 대행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시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12호, 2016. 5. 25. 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적용³⁾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기준 제3조에 따르면 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구·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에 관한 서류 허위 제출 및 확인 부적정

○○군 및 ○구에서는 [표1]과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에 관한 공고(선정기준을 포함하고 있음)를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자를 선정하고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토록 하였다.

[표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현황

<단위 : 천원>

1) ○구, ○구, ○구, ○구, ○○군

2)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감점 등 총 9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배점을 고시하고, 지적소관청에서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등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적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적소관청에서는 동 고시 기준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였음

연번	지적소관청	공고일	사업명	대행비용	사업기간	선정된 대행자
1	○○군	2015. 6. 10.	○○2지구	21,532	2015.7.21 ~ 2015.12.31.	(주)○○○○설계공사
2	○○군	2017. 5. 8.	○○1지구	26,841	2017.6.9. ~ 2017.12.21.	(주)○○○○설계공사
3	○구	2017. 5. 1.	○○3,4지구	33,828	2017.7.6. ~ 2017.12.31.	(주)○○○○측량공사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선정기준 제5조 따르면 지적측량수행자가 제출한 대행자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대행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선정기준 [별표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의 지적측량기술자 평가항목에서는 지적측량 책임 및 참여기술자는 대행자선정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선정 또는 시행중인 다른 지적재조사사업 및 다른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한 한다⁴⁾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대행자 선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지적소관청은 대행자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4) 해당 기술자에 대해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점수 불인정(0점 처리)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는지와 책임 및 참여기술자가 대행자선정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선정 또는 시행중인 다른 지적재조사사업 및 다른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주)○○○○설계공사⁵⁾에서는 [표2]와 같이 소속 측량기술자 6명, (주)○○○○측량공사⁶⁾에서는 소속 측량기술자 3명이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시행중인 다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경력증명서를 제출⁷⁾하였으며,

○○군에서는 ○○군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평가 시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시행중인 다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⁸⁾중인 (주)○○○○설계공사의 측량기술자 5명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기술자로 인정하고, 지적측량기술자 평가점수 0점을 19점으로 평가하여 대행자로 선정하는 등 [표2]와 같이 ○○군, ○구에서는 (주)○○○○설계공사⁹⁾, (주)○○○○측량공사¹⁰⁾에서 허위로 제출한 평가자료를 그대로 인정하고 평가하여 대행자로 선정하고 대행계약을 체결¹¹⁾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적측량기술자 평가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대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가 대행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다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중인 지적측량 책임 및 참여기술자 현황

5) 울산광역시 ○구 ○○로 000, 000호(○동) 대표자 ○○○

6) 울산광역시 ○구 ○○로00번길 00(○동) 대표자 ○

7) 다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중인 경력에 대한 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제출

8) ○○군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2014. 12. 24.~2015. 12. 31.)

9) 울산광역시 ○구 ○○로 000, 000호(○동) 대표자 ○○○

10) 울산광역시 ○구 ○○로00번길 00(○동) 대표자 ○○

11) ○○군 ○○2지구(2015. 7. 21.), ○구 ○○3,4지구(2017. 7. 6.), ○○군 ○○1지구(2017. 6. 9.)

연 번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공고			측량기술자 (b)		선정된 대행자의 측량기술자(b)가 공고일(a) 기준 이미 선정 또는 시행중인 재조사사업		
	지적 소관청	공고일 (a)	사업명	소속	성명	지적 소관청	사업명	중복기간 (선정일)
1	○○군	2015.06.10	○○2지구	㈜○○○○ 설계공사	○○○	○○군	○○1지구	2014.12.24 ~ 2015.12.31.
2					○○○			
3					○○○			
4					○○○			
5					○○○			
6	○구	2017.05.01	○○3,4지구	㈜○○○○ 측량공사	○○○	○구	○○2지구	2017.5.8 ~ 2017.12.29 (2017.4.25)
7					○○○			
8					○○○			
9	○○군	2017.05.08	○○1지구	㈜○○○○ 설계공사	○○○	○구	○○1지구	2016.6.24 ~ 2017.12.31.
10					○○○			
11					○○○	○○군	○○1지구 ○○1지구	2016.7.8 ~ 2017.12.28
12					○○○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확인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측량기술자의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기술자의 기술등급, 교육이수 실적, 소속, 사업 참여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지적소관청에서는 대행자 선정 시 지적측량기술자¹²⁾의 기술등급, 재직여부, 교육이수 여부, 다른 지적재조사 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량기술자의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선정기준 [별표1]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르면 지적측량기술자는 대행자 선정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부터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이미 선정 또는 시행중인 지적 재조사사업 및 다른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한 한다고 되어 있다.

12) 업체에서 제출한 인원에 따라 최소2인, 최대6인 평가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측량기술자의 경력증명서에 공고일 기준 최근 경력이 신고·기재되어 있고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구에서는 2016. 5. 26. 공고된 ○구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신청 시 제출된 (주)○○○○설계공사 ○○○의 경우, 2014. 4. 1. 부터 2016. 5. 26. 공고일 까지 경력이 누락되어 있고 발급일도 공고일 보다 1년 6개월 전인 2015. 11. 3.에 발급된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자료 보완요구 또는 관련협회 조회·확인도 하지 않는 등 [붙임]과 같이 경력증명서 발급일 및 경력에 문제가 있는 경력증명서에 대한 조회·확인을 소홀히 하여 지적측량기술자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¹³⁾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구청장, ○군수는

[징계] 위 관련자들 중 지방○○○○○ ○○○, ○○○,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위 관련자 중 지방○○○○○ ○○○은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 평가 부적정’ 건의 징계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주)○○○○설계공사, (주)○○○○측량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하시고,

13) 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가 선정되면 지적소관청에서 지체없이 측량기술자 경력을 관련협회에 통보토록 업무를 개선하고 감사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력증명서 제출요건을 마련·운영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남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 중 지방○○○○○ ○○○, 지방○○○○○ ○○○, ○○○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적재조사 참여기술사 경력 조회 현황(생략)

<유형분류>

I	이미 선정 또는 시행중인 지적재조사사업 및 타 용역에 참여중인 자로 공고일 현재 경력이 미신고 상태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이후에 경력을 신고한 사례
II	이미 선정 또는 시행중인 지적재조사사업 및 타 용역에 참여중인 자로 공고일 현재 경력이 미신고 상태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현재도 과거 경력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III	공고일 현재 경력이 미신고 상태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현재도 과거 경력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IV	공고일 현재 경력이 미신고 상태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이후에 경력을 신고한 사례